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3
------	----

2022. 7. 20.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2년 7월 14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2.7.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재편 및 업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고, 필요분야 인력 충원 등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총 정원 변동없음).

2. 주요내용

가. 자율신설기구 기능 확대에 따른 직급 조정 (3급 $\Delta 2 \rightarrow 2 \cdot 3$ 급 +2)

나. 한시기구 신설에 따른 증원 (3급 +2명)

- (폐지) 남북협력추진단 ($\Delta 1$)
- (신설) 주택공급기획관·균형발전기획관·자원회수시설추진단 (+3)

다. 수상사업부(한강사업본부) 및 북부공원여가센터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

- (본청) 일반직 4급 $\Delta 2 \rightarrow$ (사업소) 일반직 4급 +2

라.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한 정원 조정

- (5급이하)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한 장기결원 감원($\Delta 3$)
- ▶ 시립대학교 전문경력관 퇴직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 전문경력관 나군 (통계자료관리요원) $\Delta 1 \rightarrow$ 6급이하 +1 조정사항 포함

마. 시의회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전문위원실 인력 증원(+6명)

- 의회사무처 5급이하 +6명

바. 조직·업무 이관에 따른 기관 간 정원이체(20명) 및 인력보강(+2명)

- ‘인권담당관’ (본청) \rightarrow 감사위원회(합의제) 산하로 이관(20명)
- ▶ (본 청) 4급 $\Delta 1$ 명, 5급 이하 $\Delta 19$ 명 \rightarrow (합의제) 4급 +1명, 5급 이하 +19명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업무 확대에 따른 감사위원회 인력보강(6급이하 +2)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민선 8기 정책 목표와 핵심과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조직 체계를 마련하고자 공무원 총 정원(19,139명)의 변동 없이 부서 간 기능 조정·재편과 필요 분야의 인력 충원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됨.
- 세부내용은 ▶ 자율신설기구 기능 확대에 따른 직급조정 2명(2·3급), ▶ 한시기구 신설에 따른 2명(3급) 증원, ▶ 수상사업부 및 북부공원여가센터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 2명(4급), ▶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한 감원 3명(5급 이하), ▶ 시의회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전문위원실 6명 증원, ▶ 조직·업무 이관에 따른 기관 간 정원 이체 및 인력보강 22명임.
- 집행기관의 정원에서 28명을 감원(10,562명→10,534명)하여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이동(20명)과 증원(2명)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6명을 증원(395명→401명)하여 상계처리함.

< 정원 조정 내용 >

구분	총 정원	정무										별정	연구	지도	소방	경찰	교육
			일반	1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이하	전문 경력관						
현행	19,139	4	10,691	7	24	17	5	255	10	10,244	129	37	405	24	7,434	3	541
개편후	19,139 (-)	4	10,689 (Δ2)	7	26 (+2)	17	5	255	10	10,241 (Δ3)	128 (Δ1)	37	407 (+2)	24	7,434	3	541

나. 분야별 인력증감에 대한 검토

(1) 자율신설기구(경제일자리기획관·복지기획관)의 직급 조정(3급 $\Delta 2 \rightarrow 2 \cdot 3$ 급 +2)

-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기구·정원규정’)에 따라 실·국·본부 설치 기준의 상한(16~18개)의 20% 범위(3개)에서 조례로 자율신설기구를 운영하고 있음.
- 자율신설기구는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2018.9.)에 따라 자치조직권 확대 차원에서 2019년 「지방기구·정원규정」을 개정해 신설됨.
- 개정안은 경제·복지 분야의 업무 중요성과 유관기관과의 협의·조정 등 전문적인 대외적 기능 수행을 이유로 자율신설기구인 경제일자리기획관과 복지기획관의 직급을 현행 3급에서 2·3급으로 상향 조정함.
- 그 외 자율신설기구인 시민협력국(2·3급)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2.7.14. 제출)에 따라, 타 실·국에 기능별로 분산 이관되어 폐지되고, 디자인정책관(2·3급)이 신설될 예정임.
- 경제·복지 분야는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지방행정의 중요부분으로, 경제정책실과 복지정책실의 과다한 업무량과 중요도를

고려하면 기관장(1급)을 보좌하는 기획관의 직급 상향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재정, 교통, 안전, 주택 분야 1급 기관장의 보좌기구인 기획관은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복지 분야만 상향 조정해야 하는 합리적 이유를 찾기는 어려움.

< 서울시 1급 기관장 보좌기구 현황 >

1급 기구	현재		조직 개편 후	
	2·3급, 3급 기구	4급 부서 (개수)	2·3급, 3급 기구	4급 부서 (개수)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2·3급)	6개	정책기획관(2·3급)	5개
	재정기획관	4개	재정기획관	5개
경제정책실장	경제일자리기획관(자율)	6개	경제일자리기획관(자율)	7개
	신성장산업기획관	4개	신산업정책관	3개
복지정책실장	복지기획관(자율)	7개	복지기획관(자율)	7개
도시교통실장	교통기획관	6개	교통기획관	10개
	보행친화기획관	5개		
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관	8개	안전총괄관	8개
주택정책실장	주택공급기획관(임시)	11개	주택공급기획관(한시)	5개

- 한편 서울시는 신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자율신설기구를 도입한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상시기구(보조기구)가 아닌 기관장의 보좌기구로 자율신설기구를 이용하고 있고 승진적체와 법외 임시기구 해소를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시·도별 자율신설기구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설치 가능 기구수 36개 중 현재 26개의 보조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자율신설기구를 기관장의 보좌기구로 이용하는 사례는 없음.

<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자율신설기구 운영 현황 >

(기준: 2022.7.18. 현재)

시도	설치 가능 수	운영 현황		
		소계	명칭	존속기간
서울	3	3	복지기획관, 경제일자리기획관, 디자인정책관	'22.8.~ '24.8.(예정)
부산	3	3	신공항추진본부, 건축주택국, 관광마이스산업국	'23. 7. 9.
대구	2	1	통합신공항추진본부	'23. 6.30.
인천	3	2	재정기획관, 건강체육국	'23. 7.14.
광주	2	2	군공항이전추진본부	'23. 9.29.
			여성가족국	'23.12.31.
대전	2	1	트램도시광역본부	'23. 6.30.
울산	2	2	녹지정원국	'23.12.31.
			시민건강국	'22.12.31.
세종	1	1	문화체육관광국	'23. 7.29.
경기	4	0	-	-
강원	2	2	평화지역발전본부, 일자리국	'22.10.31.
충북	2	2	신성장산업국	'23.12.31.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23.12.31.
충남	2	1	청년공동체지원국	'22.12.31.
전북	2	1	새만금해양수산물국	'23. 8.31.
전남	2	1	에너지산업국	'23. 2.28.
경북	2	2	과학산업국, 아이여성행복국	'24. 1.31.
경남	2	2	여성가족아동국	'24. 1. 1.
			미래전략국	'23. 1. 3.

- 또한, 자율신설기구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성과평가로 존속기한의 연장을 결정하고 있으나, 경제일자리기획관과 복지기획관은 업무의 독자성 없이 소속기관의 전체 실적을 성과로 제시하고 있어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제도를 형해화(形骸化)하고 있음.
- 이처럼 자율신설기구가 신규 행정수요와 관계없는 조직 신설이나

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법외 임시기구의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2) 한시기구 신설에 따른 증원(증원 3급 2명, △1·+3)

-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¹⁾, 서울시는 현재 ‘문화시설추진단’, ‘남북협력추진단’ 을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있음.
- 이 중 문화시설추진단은 2022년 5월 25일 제출된 ‘행정기구 조례 일부개정안’ (제3201호)이 의결됨에 따라 2022년 8월 18일 폐지됨.
- 한시기구는 조례로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고,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하여 존속기한을 연장(최장 6년)할 수 있음.

< 서울시 한시기구 운영 현황 >

-
-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 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구분	직급	구성	現 존속기한 (최초기한)
문화시설추진단 (폐지 결정)	3급	1단 2과 60명	'21.8.19. ~ '22.8.18. ('16.8.19. ~ '17.8.18.)
남북협력추진단	3급	1단 2담당관 29명	'21.11.1 ~ '22.10.31 ('18.11.1 ~ '19.10.31)

- 개정안에 따르면, ‘남북협력추진단’ 과 ‘문화시설추진단’ 은 폐지되고 (3급 △2), 민선 8기 시정 핵심과제의 수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승인(1년)을 받아 주택공급기획관, 균형발전기획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을 각각 한시기구로 신설함(3급 +3명).
- 남북협력추진단은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 이산가족, 탈북주민 지원 등 실행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국의 남북협력과로 축소·폐지됨.
- 주택공급기획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신속한 주택공급이라는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해 주택공급 관련 부서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자 종전 법외 임시기구에서 한시기구로 전환됨.
- 균형발전기획관은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의 수립·실행과 도심공간 혁신에 행정역량을 집중해 추진할 수 있도록 법외 임시기구에서 한시기구로 편입됨.
-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은 주민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민원과 갈등을 조정·해결하여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인 건립과 추진을 목적으로 신설됨.

- 이처럼 개정안은 한시기구의 사업 수요와 목적 실현 여부 등을 고려해 기존의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시정 역점사업을 수행할 기구를 한시기구로 신설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
- 또한, 그동안 법외 임시기구로 운영하던 주택공급기획관, 균형발전기획관을 한시기구로 편입해 정규기구화한 점은 위법사항을 해소하는 바람직한 입법 조치임.
- 그러나 환경에너지기획관은 명칭만 환경기획관으로 변경한 채 유지될 예정인 바, 조속히 정규기구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함.

< 서울시 법외 임시기구 운영 현황 >

법외 임시기구	개정안
주택공급기획관	· 한시기구로 전환(2022.8.19.)
균형발전기획관	· 한시기구로 전환(2022.8.19.)
환경에너지기획관	· 환경기획관으로 명칭 변경하여 유지

- 다만, 이번에 한시기구로 신설되는 행정기구들은 1년의 존속기한(2022.8~2023.8)으로는 정책목표로 제시한 주요 정책과 사업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조직 운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당초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한시기구 설치 협의시에 존속기간 3년(2022.5~2025.8)을 요청했으나 1년으로 승인함.

< 한시기구의 주요정책 및 사업 >

기구명(직급)	주요정책 및 사업
주택공급기획관	· 주택공급정책 총괄 및 조정 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 '26년까지 24만호 공급 ② 소규모 주택 정비 '모아주택' : '26년까지 3만호 공급 ③ 청년주택, 장기전세주택 : '26년까지 11만호 공급
균형발전기획관	· 지역별 핵심거점 조성 총괄 및 조정 ① 혁신거점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도심권) '핵심 5축'·'녹지생태도심' 구축(~'30년) (동남권) 잠실 일대 스포츠·MICE 복합단지 조성(~'29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28년) (동북권) 창동 일대 문화예술거점 조성(~'25년) 상계동 일대 혁신성장거점 조성(~'30년) (서부권) 서울혁신파크 전면 재조성(~'26년) DMC역 철도부지 입체개발(~'26년) ② 지역맞춤형 개발연계사업 추진 (경제거점 육성) 김포공항 혁신지구 추진(~'25년) (중심지 활성화) 용산전자상가 일대 청년창업 중심지 조성 및 산업 고도화(~'25년) (지역자산 특화) 홍제 유진상가의 상업문화 랜드마크화(~'24년) (대표공간) 광화문광장의 국가 대표공간화
자원회수시설추진단	·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 및 기존 시설 고도화 ①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 24년~'27년 12월 ② 노후화된 자원회수시설(4개소) 현대화 및 시·구 재활용 시설 증설

(3) 수상사업부 및 북부공원여가센터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

-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맞춰 서울시 본청(시민협력국) 4급 2명을 정원의 증감없이 사업소인 한강사업본부와 공원여가센터로 이체함.
- 한강사업본부는 수상여가 활성화 전담조직인 '수상사업부' 를 신설하고, 공원여가센터는 '북부공원여가센터' 를 신설하면서 이를 위한 정원을 각각 이체·반영함.

- 수상사업부는 한강의 복합문화공간 기능을 강화하고 수상관광 활성화를 위해 4개의 과가 신설될 예정이다.

< 수상사업부 업무 분장 >

부서명	주요업무
수상기획과	· 서해벚길 및 수상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수상문화공간 기획
수상관광레저과	· 수상관광 활성화(수상레포츠클러스터, 관광선), 수상레저공간 조성
수상관리과	· 수상시설물 및 운항선박 안전점검·관리, 한강 수난사고 예방
수상시설과	· 한강 주운수로 준설, 항만시설(국제여객선터미널, 수상호텔 등) 조성

- 북부공원여가센터는 안정적 공원 관리와 대시민 여가서비스 향상을 위해 4개의 과가 신설되며, 관리공원 4개소(북서울 꿈의 숲, 종량캠핑 숲, 서울 창포원, 간데메 공원)와 녹지 1개소(경춘선 숲길)를 관할할 예정이다.

< 공원녹지여가센터 업무 분장 >

공원녹지사업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공원녹지여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명칭	위치	관할구역	명칭	위치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중부공원 녹지사업소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예정동)	종로, 중구, 용산, 도봉, 강북, 노원, 성북, 동대문, 중랑	서울특별시 중부공원 여가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예정동)	은평구, 종로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서울특별시 서부공원 녹지사업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성산동)	마포, 영등포, 강서, 양천, 구로, 금천, 은평, 서대문	서울특별시 서부공원 여가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성산동)	강서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부공원 녹지사업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신대방동)	성동, 광진, 강동, 서초, 강남, 송파, 동작, 관악	서울특별시 동부공원 여가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성로 273(성수동)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신설>	서울특별시 북부공원 여가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 173(번동)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 개정안은 조직개편으로 폐지되는 부서의 정원을 신설조직에 반영하여 별도 증원 없이 신규 행정수요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는 효율적인 정원 운영으로 볼 수 있음.

(4) 의회사무처 상임위원회 신설(증원 6명)

-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정수 증가(110명 → 112명)로 상임위원회가 증설됨에 따라 전문위원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 10명 중 기반영 1명과 재배치 3명을 제외한 6명을 신규로 반영함.
- 증원 내용은 의사지원팀 4명(행정5급 1명·행정6급 1명·행정7급 2명)과 입법지원팀 2명(임기제5급 1명·임기제7급 1명)임.

< 신설 상임위원회 정원 배정 내역 >

구분	정원	정원 내역
수석전문위원	1명	· 서기관 또는 개방형 4호(기 증원)
의사지원팀	4명	· 행정5급 1, 행정6급 1, 행정7급 2
입법지원팀	5명	· 임기제 5급 1, · 임기제 6급 2(재배치), 임기제 7급 1 · 행정 7급 1(재배치) ※ 시간제(입법지원관) 2명 별도

- 시의회사무처는 지난 7월 11일 정원 조례의 개정·시행으로 반영된 수석전문위원(4급) 외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2팀 신설과 12명의 증원을 요청함.
- 그러나, 서울시는 신설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

에서 담당할 업무량이 유동적이라는 이유로 적정 인력 규모를 10개 상임 위원회 평균인 12.4명에 못 미치는 10명으로 산정함.

-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2022.1.13.)으로 자치분권의 확대와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가 뒷받침되면서 상임위원회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신설 위원회에 적정 인력보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함.
- 한편, 상임위원회 신설로 인한 속기업무 증가에 따라 원활한 회의록 작성에 필요한 속기인력 증원이 함께 요구됨.
 - 현재 9개 상임위원회(본회의,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외) 담당 속기사는 2인 1조로 18명이 운영²⁾ 중이며, 상황에 따라 부족 인력은 임시 속기사를 고용하여 충당하고 있어 안정적인 인력 운영이 필요함.

(5) 감사위원회 인력 보강(증원 2명)

-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2021.10.2.시행)되어 부동산 관련 업무자에게 재산등록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늘어난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행정7급)을 증원함.

2)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속기조의 편성 및 속기시간) ①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사 전원이 교대로 속기하고,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회별 2인 1조로 한다.

< 법령개정에 따른 재산등록관리 등 현황 >

(단위: 명, '21.11월 기준)

대 상		등록관리		재산심사		비 고
		법령 시행 전	법령 시행 후	법령 시행 전	법령 시행 후	
계		1,805	4,510	2,291	4,996	약 2,705명 증가
서울시 3급 이상 (시립대 포함)		98	98	-	-	·등록관리 → 서울시 ·재산심사 → 인사혁신처
서울시 4급		290	290	290	290	
특정부서 7급 이상 (감사, 세무 등)		1,240	1,240	1,240	1,240	·소방직(1,387명) 제외
시의원		110	110	-	-	·등록관리 → 서울시 ·재산심사 → 인사혁신처
공직유관기관 단체장 및 상임이사 이상		67	67	67	67	
구의원 및 자치구 4급		-	-	694	694	·등록관리 → 자치구 ·재산심사 → 서울시
신규 추가 인원	서울시 직원 (44부서)	-	1,130	-	1,130	개정법령안에 따른 업무 담당부서의 현원이며,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토지 취득·사용' 해당 여부에 따라 재산등록· 심사 대상자 수 변동 가능
	SH 직원	-	1,575	-	1,575	SH 직원 등록의무자 추가

※ 공직유관단체(SH)에 재산심사권한 위임 불가능

-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 직원과 부동산 유관부서 지정 (2021.9.29.)에 따라 12개 실·국(본부), 42개 부서 공무원에 대해 재산의 등록·관리를 수행하게 됨.
- 이에 따라 재산등록과 재산심사 대상자가 약 2,705명(서울시 공무원 1,130명, SH 직원 1,575명) 증가하고, 부동산 직무 관련 공직자의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제한되면서 심사 범위가 확대되고 업무 난이도가 심화됨.

- 현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윤리사무팀의 정원은 3명이나, 급증된 업무량을 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현원 7명(팀장1·행정6급 2명·전산6급 1명·행정7급 2명·행정8급 1명)으로 운영 중임.
- 해당부서에서는 정원 9명 확보를 목표로 6명(행정6급 2명·전산6급 1명·행정7급 3명)을 증원 요청했으나, 2명(행정7급)만 반영됨.
- 공무원 정원이 법률 개정으로 급증한 업무량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조직 운영이 지속되지 않도록 신속한 정원확보를 통해 정상적인 조직운영과 원활한 업무추진 환경을 마련해야 함.

(6)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한 정원 조정

- 시립대학교 전문경력관 나군(통계자료관리요원)의 정년퇴직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 일반직 행정6급으로 상계조정함.

< 시립대 전문경력관 현황 >

직렬	직급	정원시행일	운영정원	현원	업무
비상대비. 민방위요원	나군	2015/07/01	1명	1명	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
통계자료 관리요원	나군	2013/12/12	1명	정년퇴직 ('22.6)	학사업무 자료조사

- 통계자료관리요원은 학사 조사를 위한 전문인력으로 별정직 7급으로 최초 임용(1990.6.) 후 별정직 6급으로 직급조정을 거쳐 전문경력관 나군

(2012.12..)으로 전환하여 운영됨.

- 현재 학사업무와 관련된 자료조사는 대학정보공시와 교육부 각종 지침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므로 전문인력배치의 필요성이 약화되면서 기존 전문 경력관 나급 정원에 대응되는 일반직 6급 정원으로 조정함.

(7) 미술관·박물관 건립 인력 확대(증원 2명)

- ‘서울사진미술관’ 과 ‘서서울미술관’ 의 본격적인 개관 준비를 위해 ‘박물관과’ 의 전담팀 신설에 필요한 학예연구관(팀장 1명)과 학예 연구사 1명(전시프로그램 기획)을 증원함.
 - 서울사진미술관(2024.5. 개관예정)은 140년 한국 사진사를 정립하는 최초의 공공 사진미술관으로, 개관 프로그램 기획 준비기간이 최소 1년 이상 필요하며 착공 초기 단계부터 작품 수집 정리를 위한 사전 준비기간이 요구됨.
 - 서서울미술관(2024.11. 개관예정)은 문화 취약지역인 금천구에 건립되는 서남권 최초의 공립 미술관으로, 청소년 대상의 예술·과학 융복합 교육과 뉴미디어(디지털예술) 장르에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함.
-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사진·디지털예술 분야 신규 박물관의 원활한 개관 준비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증원의 필요성은 인정됨.

< 미술관 건립 현황 >

※ 서울사진미술관 건립 개요

- ▶ 위 치 : 도봉구 창동(창동 상계·광역중심 지구)
- ▶ 규 모 : 연면적 7,048㎡(지하 2층 / 지상 4층)
- ▶ 사업기간 : 2016.1월 ~ 2024.5월(개관)
- ▶ 주요시설 : 전시실, 스튜디오 및 북카페
- ▶ 총사업비 : 38,814백만원('22년 예산 9,013백만원)
- ▶ 공 정 률 : 건축공사 10% (금년 전체 건축공사 공정률의 30% 목표)

※ 서서울미술관 건립 개요

- ▶ 위 치 : 금천구 독산동(구청 인근 금나래중앙공원 내)
- ▶ 규 모 : 연면적 7,187㎡(지하 2층 / 지상 1층)
- ▶ 사업기간 : 2015.6월 ~ 2024.11월(개관)
- ▶ 주요시설 : 프로젝트갤러리, 연구 실습실, 교육장
- ▶ 총사업비 : 44,197백만원('22년 예산 8,050백만원)
- ▶ 공 정 률 : 건축설계 완료, 착공 예정(금년 전체 건축공사 공정률의 25% 목표)

- 다만, ‘박물관과’는 신규 박물관 건립·개관·이관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원된 연구 인력들이 박물관 설립 이후에도 종합적인 박물관 운영 방안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의 재조정이 요구됨.³⁾
- 현재 조성 중인 서울사진미술관과 서서울미술관은 시립미술관 분관으로 업무이관 예정임.

(8) 조직 이관에 따른 기관 간 정원이체(20명)

- 조직개편에 따라 정무부시장 산하 인권담당관의 인권침해 조사 기능을 감사위원회로 이관하여 감사·조사 기능을 일원화하고 인권

3) ‘서울시 박물관·미술관 관련 조직진단 및 재설계 컨설팅’(2019.12. EONgroup)에서 서울시 박물관·미술관 발전 기반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마련하기 위해 기획, 건립, 운영, 지원, 네트워킹 등 종합적 정책·행정 기능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음.

침해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됨.

- 업무이관에 따라 ‘인권담당관’ 의 20명(4급 1명, 5급 이하 19명) 정원을 합의제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 로 이체함.
- 다만, 인권침해 조사업무는 사건 발생시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와 피해구제, 진실규명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조사·감사업무와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함.

다. 종합의견

- 민선 8기 서울시는 성과지향적이고 도시의 정책수요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조직체계를 마련하여 시정의 실행력을 뒷받침하고자 조직 개편을 추진함.
- 이번 조직개편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 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조직·정원 동결 기조에 맞춰 조직과 정원 규모를 늘리지 않으면서 부서 간 기능조정·재편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특징이 있음.
- 다만, 기존 사업과 인력의 변화 없이 시정 역점사업에 조직과 인력이 집중됨에 따라 조직이 축소되거나 통·폐합되는 일부 부서는 상대적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사업 추진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음.

- 특히 집행기관의 정원 감원(28명)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제출되지 않아 행정수요 감소와 비효율적 조직의 정비 등에 대한 적정성 판단을 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
----------	----

제출년월일 : 2022년 7월 14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재편 및 업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고, 필요분야 인력 충원 등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총 정원 변동없음)

2. 주요내용

가. 자율신설기구 기능 확대에 따른 직급 조정 (3급 $\Delta 2 \rightarrow 2\cdot 3$ 급 +2)

나. 한시기구 신설에 따른 증원 (3급 +2명)

- (폐지) 남북협력추진단 ($\Delta 1$)
- (신설) 주택공급기획관·균형발전기획관·자원회수시설추진단 (+3)

다. 수상사업부(한강사업본부) 및 북부공원여가센터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

- (본청) 일반직 4급 $\Delta 2 \rightarrow$ (사업소) 일반직 4급 +2

라.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한 정원 조정

- (5급이하)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한 장기결원 감원($\Delta 3$)
 - ▶ 시립대학교 전문경력관 퇴직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 전문경력관 나군

(통계자료관리요원) $\Delta 1 \rightarrow$ 6급이하 +1 조정사항 포함

- (연구직) 미술관·박물관 건립 업무 관련 증원(연구관 +1, 연구사 +1)

마. 시의회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전문위원실 인력 증원(+6명)

- 의회사무처 5급이하 +6명

바. 조직·업무 이관에 따른 기관 간 정원이체(20명) 및 인력보강(+2명)

- ‘인권담당관’(본청) → 감사위원회(합의제) 산하로 이관(20명)
 - ▶ (본 청) 4급 △1명, 5급 이하 △19명 → (합의제) 4급 +1명, 5급 이하 +19명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업무 확대에 따른 감사위원회 인력보강(6급이하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 기구의 설치운영), 제9조의2(시·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제30조(정원의 규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2. 7. 7. ~ 7. 11.) 결과: 의견제출 1건
 - 의회사무처 추가 6명 증원 요구(일부반영)
 - 의회사무처 정원 범위 내 속기직 2명 재배치 예정(규칙 개정사항)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10,562명”을 “10,53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395명”을 “40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204명”을 “226명”으로 한다.

같은 표 일반직 계란, 2·3급란, 4급란, 5급 이하 소계란, 전문경력관 소계란, 연구직 계란, 연구관란, 연구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10,689					
2·3급	26	21		1	3	1
4급	255	152	19	8	68	8
5급 이하 소계	10,241					
전문경력관 소계	128					
연구직 계	407					
연구관	63	5		34	24	
연구사	344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에 두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19,139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부터 제6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u>10,562명</u></p> <p>2. ~ 3. (생략)</p> <p>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395명</u></p> <p>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u>204명</u></p> <p>6. (생략)</p> <p>[별표 4]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p>	<p>제2조(정원의 총수) ----- ----- ----- -----.</p> <p>1. ----- ----- -----: <u>10,534명</u></p> <p>2. ~ 3. (현행과 같음)</p> <p>4. ----- : <u>401명</u></p> <p>5. ----- : <u>226명</u></p> <p>6. (현행과 같음)</p> <p>[별표 4] ----- -----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계</th> <th>본청</th> <th>의회사무처</th> <th>직속기관</th> <th>사업소</th> <th>합의제행정기관</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11,70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계</td> <td>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시장</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부시장</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1</td> </tr> <tr> <td>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1</td> </tr> <tr> <td>일반직계</td> <td>10,69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급</td> <td>7</td> <td>6</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2·3급</td> <td>24</td> <td>19</td> <td></td> <td>1</td> <td>3</td> <td>1</td> </tr> <tr> <td>3급</td> <td>17</td> <td>8</td> <td></td> <td>1</td> <td>8</td> <td></td> </tr> <tr> <td>3·4급</td> <td>5</td> <td>5</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255</td> <td>155</td> <td>19</td> <td>8</td> <td>66</td> <td>7</td> </tr> <tr> <td>4·5급</td> <td>10</td> <td>10</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 이하 소계</td> <td>10,24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전문경력관 소계</td> <td>129</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별정직계</td> <td>37</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상당</td> <td>5</td> <td>3</td> <td>2</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상당 이하 소계</td> <td>3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총계	11,702						정무직계	4						시장	1	1					부시장	1	1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1					1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1					1	일반직계	10,691						1급	7	6	1				2·3급	24	19		1	3	1	3급	17	8		1	8		3·4급	5	5					4급	255	155	19	8	66	7	4·5급	10	10					5급 이하 소계	10,244						전문경력관 소계	129						별정직계	37						4급상당	5	3	2				5급상당 이하 소계	32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계</th> <th>본청</th> <th>의회사무처</th> <th>직속기관</th> <th>사업소</th> <th>합의제행정기관</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11,70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계</td> <td>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시장</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부시장</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1</td> </tr> <tr> <td>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1</td> </tr> <tr> <td>일반직계</td> <td>10,689</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급</td> <td>7</td> <td>6</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2·3급</td> <td>26</td> <td>21</td> <td></td> <td>1</td> <td>3</td> <td>1</td> </tr> <tr> <td>3급</td> <td>17</td> <td>8</td> <td></td> <td>1</td> <td>8</td> <td></td> </tr> <tr> <td>3·4급</td> <td>5</td> <td>5</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255</td> <td>152</td> <td>19</td> <td>8</td> <td>68</td> <td>8</td> </tr> <tr> <td>4·5급</td> <td>10</td> <td>10</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 이하 소계</td> <td>10,24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전문경력관 소계</td> <td>128</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별정직계</td> <td>37</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상당</td> <td>5</td> <td>3</td> <td>2</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상당 이하 소계</td> <td>3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총계	11,702						정무직계	4						시장	1	1					부시장	1	1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1					1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1					1	일반직계	10,689						1급	7	6	1				2·3급	26	21		1	3	1	3급	17	8		1	8		3·4급	5	5					4급	255	152	19	8	68	8	4·5급	10	10					5급 이하 소계	10,241						전문경력관 소계	128						별정직계	37						4급상당	5	3	2				5급상당 이하 소계	32					
구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총계	11,702																																																																																																																																																																																																																																																																										
정무직계	4																																																																																																																																																																																																																																																																										
시장	1	1																																																																																																																																																																																																																																																																									
부시장	1	1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1					1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1					1																																																																																																																																																																																																																																																																					
일반직계	10,691																																																																																																																																																																																																																																																																										
1급	7	6	1																																																																																																																																																																																																																																																																								
2·3급	24	19		1	3	1																																																																																																																																																																																																																																																																					
3급	17	8		1	8																																																																																																																																																																																																																																																																						
3·4급	5	5																																																																																																																																																																																																																																																																									
4급	255	155	19	8	66	7																																																																																																																																																																																																																																																																					
4·5급	10	10																																																																																																																																																																																																																																																																									
5급 이하 소계	10,244																																																																																																																																																																																																																																																																										
전문경력관 소계	129																																																																																																																																																																																																																																																																										
별정직계	37																																																																																																																																																																																																																																																																										
4급상당	5	3	2																																																																																																																																																																																																																																																																								
5급상당 이하 소계	32																																																																																																																																																																																																																																																																										
구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총계	11,702																																																																																																																																																																																																																																																																										
정무직계	4																																																																																																																																																																																																																																																																										
시장	1	1																																																																																																																																																																																																																																																																									
부시장	1	1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1					1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1					1																																																																																																																																																																																																																																																																					
일반직계	10,689																																																																																																																																																																																																																																																																										
1급	7	6	1																																																																																																																																																																																																																																																																								
2·3급	26	21		1	3	1																																																																																																																																																																																																																																																																					
3급	17	8		1	8																																																																																																																																																																																																																																																																						
3·4급	5	5																																																																																																																																																																																																																																																																									
4급	255	152	19	8	68	8																																																																																																																																																																																																																																																																					
4·5급	10	10																																																																																																																																																																																																																																																																									
5급 이하 소계	10,241																																																																																																																																																																																																																																																																										
전문경력관 소계	128																																																																																																																																																																																																																																																																										
별정직계	37																																																																																																																																																																																																																																																																										
4급상당	5	3	2																																																																																																																																																																																																																																																																								
5급상당 이하 소계	32																																																																																																																																																																																																																																																																										

현							개정안						
구분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구분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연구직 계	405						연구직 계	407					
연구관	62	4		34	24		연구관	63	5		34	24	
연구사	343						연구사	344					
지도직 계	24						지도직 계	24					
지도관	2			2			지도관	2			2		
지도사	22						지도사	22					
교육공무원 계	541						교육공무원 계	541					
총 장	1			1			총 장	1			1		
교수 등	465			465			교수 등	465			465		
조 교	75						조 교	75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총 정원 변동이 없어,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므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2133-6729)